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18년 8월 6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38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18년 8월 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주택과장 주현관)

가. 제안이유

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고, 조례에 사용된 용어 일부를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(안 제3조제2항제3호)
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.
 - ※ 환경친화적 자동차 : 전기·태양광·하이브리드 자동차 등

○ 조례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3조제2항)

- 제1조(목적)의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약칭(이하 " "이라 한다)을 각각 제7조와 제12조로 이동

- ※ 제1조의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
-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므로 단위를 한글로 정비 : % → 퍼센트, cc → 시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통한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,
- 법제처 법령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단위를 한글로 표기하여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,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【붙임】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"을 "「주차장법」 및"으로, "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"을 "시행령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"법 제7조제1항"을 "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"50%"를 각각 "50퍼센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1,000cc미만"을 "1,000시시 미만"으로, "50%"를 "50퍼센트를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
제12조제2항 본문 중 "영 제6조제1항"을 "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「주차장</u>	제1조(목적) <u>「주차장</u>
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	법」 및
은 법 <u>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</u>	<u>시행령</u>
<u>다)</u>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	
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,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법	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
<u>제7조제1항</u> 및 법 제12조제2항	「주차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
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	다) 제7조제1항
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"공	
영주차장"이라 한다)의 주차요	
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	
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민	
간노외주차장(이하 "민영주차	
장"이라 한다), 「자연공원법」	
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	
국・도・군립공원의 주차장,	
「관광진흥법」 제4조에 따라	
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,	
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에 따라	
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	
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	
설치자가 정한다.	
②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	2

-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다음과 같이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.
-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고, 해당 장애인이 탑승(자가운전이나 대리운전 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경감할 수 있다.
- 1의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 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%를 경 감할 수 있다.
- 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배기량 <u>1,000cc</u> <u>미만</u>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<u>50%</u> 경감할 수 있다.

<신 설>

·.
1
- <u>50퍼센트</u>
1의2
<u>50퍼센트</u> -
2
<u>1,000</u> 시
시 미만
<u>50</u> 퍼센트를
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

- ③ ④ (생 략)
- 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 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
 -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 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<u>영 제6조제1항</u>의 별표 1 과 같다. 다만, 「건축법 시행 령」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(연면적 합계가 100제 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 및 농・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 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 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③ ④ (생 략)

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 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 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기준) ①
(현행과 같음)
② -------- <u>「주차장법 시행령」(이</u>
하 "영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-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